

대구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1003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장동찬, 정동욱, 유지현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지근

변론 종결 2023. 5. 18.

판결 선고 2023. 6. 22.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7. 20. 접수 제323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북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C'의 대표자인 B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함),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 함)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D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외에 이행일 이후의 원고의 정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그 지급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의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보증번호	E	F
보증금액	20,000,000원	30,000,000원
보증일자	2018. 6. 5.	2020. 4. 17.
보증기한	2023. 6. 2.	2025. 4. 11.

다.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2018. 6. 5. 2,000만 원, 2020. 4. 17.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B는 2021. 6. 18. 및 2021. 7. 6.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사고'라 함)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 11. 8. D은행에 합계 41,775,344원(=제1약정 13,464,786원 + 제2약정 28,310,558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미환급보증료 등 610,106원을 상계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대위변제금은 41,165,238원이 되었다.

마. B는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21.

7. 20.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7. 20. 접수 제32344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45,627,000원 상당의 경북 경산시 G 전 1005㎡와 시가 5,75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는 ① H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3,250만 원의 근저당채무, ② I에 대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채무, ③ J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채무, ④ K에 대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채무, ⑤ L에 대한 채무 2,588,000원, ⑥ M에 대한 채무 2,586,000원, ⑦ N에 대한 채무 4,545,000원, ⑧ D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41,775,344원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살피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B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날은 2021. 11. 8.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함)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1. 7. 20.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보증사고가 2021. 6. 18. 및 2021. 7. 6.에 각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2021. 11. 8. 원고가 D은행에 B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O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전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바에 따른 것이기에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B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1. 7. 20. 접수 제323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천종호

별지